

제 441 호

1974. 4. 15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청 양택식

편집 : 문화공보실장 김경호

전화 75-7834

인쇄 :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

전화 75-6090

# 시보

차 례

●	조	례	
	제 828 호 :	서울특별시보건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	3
	제 829 호 :	서울특별시립아동상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	4
	제 830 호 :	서울특별시 국민주택관리조례	4
◎	운	경	
	제 384 호 :	서울특별시민원사무처리규정시행세칙중 개정세칙	8
◎	고	시	
	제 9 호 :	서울특별시 폐업사토성분 등록경신고시	9
	제 37 호 :	서울특별시 사토성분 등록고시	10
	제 38 호 :	서울특별시임묘지관리사무소와 그지소의명칭 및 위치조사	11
	제 39 호 :	도시계획 용도지역 지적승인	11
	제 40 호 :	도시계획 방화지구 지적승인고시	12
◎	공	고	
	제 63 호 :	도봉및장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시행인가공고	13
	제 64 호 :	도시계획 (학교) 사업시행허가원부완료	14
	제 65 호 :	서울특별시중소기업수출품생산지경업체변경 및 해제지정 공고	14
	제 67 호 :	서울특별시 폐유지 매수인 지정공고	15
◎	사	별	16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## 서울특별시

**조** **례**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보건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양택식

1974년 4월 8일

◎ 서울특별시 조례 제 828 호

서울특별시 보건소설치  
조례중 개정조례

서울특별시 보건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중 「서울특별시 성북구보건소」

다음에 「서울특별시 도봉구보건소」

를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보건소」

다음에 「서울특별시 관악구보건소」

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명 칭	위 치	담 당 구 역
서울특별시 도봉구보건소	도봉구 수유동 192외1	도 봉 구
서울특별시 관악구보건소	관악구 봉천동 397외2	관 악 구

별표: 위치란중 서울특별시 성동구보건소, 서울특별시 성북구보건소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보건소의 위치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명 칭	위 치	담 당 구 역
서울특별시 성동구보건소	성동구 용인동 131번지	성 동 구
서울특별시 성북구보건소	성북구 삼선동 5가411	성 북 구
서울특별시 마포구보건소	마포구 용강동 70외2	마 포 구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립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양택식

1974년 4월 8일

◎ 서울특별시조례제 829 호

서울특별시립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

서울특별시립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 3조 (공무원) ①상담소에 소장을 두되 소장은 사회사업전문가인 3급을부 상당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.

②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무를 봉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.

③소장의에 아동복지지도원 기타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④수석 아동복지지도원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이 사고가 있을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국민주택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양택식

1974년 4월 8일

◎ 서울특별시조례제 830 호

서울특별시국민주택관리조례

제 1조 (목적) 이 조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 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과 부대시설 및 부리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주택과 부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임주자의 선정) 국민주택의 임주자는 주택이 없는 시민으로서 1세대 1호에 한하여 공모하여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군사원호보상법 제 2조 및 국가

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할당권  
제 2 조의 대상자 및 복수분양을  
목적으로 건설한 주택은 그러하지  
아니할 수 있다.

제 3 조 (부리시설의 분양 및 임대)  
부리시설의 분양 및 임대는 공모  
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서울  
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  
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 
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 4 조 (인주자의 모집) ①인주대상  
자를 공모하고자 할 때에는 신문공  
고에 의한다.

②전항의 공고에는 분양 또는 임  
대의 구분, 주택의 소재지, 규모,  
인주자의 자격, 주택가격 또는 인  
대료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 
한다.

③인주신청자수가 분양 또는 임대  
예정 호수를 초과할 때에는 추첨  
에 의하여 인주자를 선정하여야  
한다.

제 5 조 (주택가격) 국민주택의 분양  
가격은 국민주택 가입산물기준에  
의한다.

제 6 조 (임대료) 국민주택의 임대료  
는 원금, 이자, 관리보잉료, 유지수  
선지, 편의의 및 미충당부담을  
산출하여 결정한다.

제 7 조 (임주금) 임주금은 주택가격  
액의 종자금을 제외한 금액을 논  
박할 수 있다.

제 8 조 (보증금) ①국민주택을 분양  
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임주  
신청서에 주택가격 또는 임대보증  
금의 10%에 해당하는 임주신청  
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
②인주대상자가 분양 또는 임대계  
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주택가  
격 또는 임대보증금의 10%에  
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 
한다. 이때 이미 납부한 임주申  
청보증금은 이를 계약보증금으로  
미련할 수 있다.

제 9 조 (계약보증금의 시귀속) 임주  
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 
에 관한 바에 따른 임주금 및  
임대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  
에는 계약보증금은 시에 귀속한다.

## 제 10조 (분양 또는 임대계약)

①분양 또는 임대 대상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즉시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②전항의 통지를 받은 입수대상자는 기일내에 분양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③입수대상자가 전항의 기일내에 분양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선정된 입수 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한다.

## 제 11조 (주택의 관리) ①입주자는

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 부리시설 및 부대시설의 사용자도 또한 같다.

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인을 두거나 입주자가 공동관리하게 할 수 있다.

## 제 12조 (부대시설 및 부리시설의

관리) ①전기 상. 하수도, 통신시설은 전기사업법, 하수도법, 전기통

신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사업자가 관리한다.

②부리시설은 시장이 관리하거나 입주자가 공동관리하여야 한다.

③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리시설을 위탁 관리할 수 있으며 의료시설, 체육탕, 시장은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. 이때의 분양 또는 임대절차는 전제 1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준용한다.

## 제 13조 (임대기간) 임대주택의 임대

기간은 1년간으로 하되 계속 연장 갱신할 수 있다.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## 제 14조 (입주금, 용자금에 대한 할부

금, 월세금등의 납부) ①입주금, 용자금에 대한 할부금, 월세금, 화재보험료등의 금액, 납부기간, 납부방법등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②전항의 납부조건은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.

제 15조 (연체이자) 전조의 입주금, 용자금에 대한 할부금, 월세금 및 채권보통료를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미납금액에 대하여 이자제한법 제 1조의 규정에 의한 최고이자율을 가산 징수한다.

제 16조 (채권보존) 분양주택의 용자금에 대한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국민주택은 시장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거나 또는 시장을 권리자로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.

제 17조 (주택의 양도) 분양주택의 입주자가 할부금을 완납하기 전에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 18조 (승계) 국민주택 및 복리시설의 상속인 기타 포괄승계인은 그 증빙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 19조 (입주자의 행위제한) 입주자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고자

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1. 주택의 규모를 변경하고자 할 때
2. 주택을 주거 이외의 타목적과 병행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
3. 복리시설에 대한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
4. 주택지상에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
5.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

제 20조 (계약의 해제) 입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
1. 계약자가 이 조제 및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
2. 입주자가 제 1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
3. 기타 주택관리에 대한 시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

제 21조 (주택의 인도)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 또는 임대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입주자는 시장이 정하는 기일내에 주택을 식별

양도하여야 한다.

제 22 조 ( 소유권이전 ) ①시장은 입주자가 입주금과 할부금을 완납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주택의 소유권을 입주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.

②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비용은 입주자 부담으로 한다.

제 23 조 ( 손해배상 ) 입주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국민주택 또는 부리시설을 훼손하였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거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.

제 24 조 ( 시행규칙 )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②(폐지조례) 서울특별시조례 제 612 호 ( 1970.4.10 ) 서울특별시시영주

택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③(경과조치)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그 절차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
훈 명

○ 서울특별시훈명제 384 호

서울특별시민원사무처리규정시행세칙 중 개정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1974년 4월 12일

서울특별시장

서울특별시민원사무처리 규정시행세칙 개정세칙

서울특별시민원사무처리 규정시행세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11 조 제 2 항 중 \* 원람에 수록되지 아니한 민원사무는 원람화되기 전에는 취급할 수 없으며 \* 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규정은 1974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**고 시**

의하여 다음과 같이 배합사로 성분 등록이 갱신되었기 고시한다.

◎ 서울특별시 배합사로 성분 등록 갱신고사 (제 9 호)

1974. 3. .

사로관리법 시행규칙 제 8 조 규정에

서울특별시 강

등록번호	공장명	소재지	대표자	사 로			사 로 성 분				주요이교
				종류	명칭	용도	최소량 포장량	최대량 포장량	조성율 조성분	조성분 조성분	
21-36	계일축산 농업회사	성동구 길동459	황종원	배합 사로	사관초기용 배합사로	초산후대략 20주까지(산란용 기)	15.0	2.0	7.0	13.0	74.430자 76.429자
21-37	·	·	·	·	사관중기용 배합사로	초산후대략 21 주~35주	14.5	2.0	7.0	13.0	·
21-38	·	·	·	·	사관말기용 배합사로	초산후대략 36주이상	14.0	2.0	8.0	13.0	·
21-39	·	·	·	·	부화알리 기배합사로	부화후대략 4 주까지	19.0	2.0	6.0	9.0	·
21-40	·	·	·	·	부화알리 기배합사로	부화후대략 4주 이상(산란용4주 이상)	16.0	2.5	6.0	10.0	·
21-41	·	·	·	·	중영아리 기배합사로	부화후대략 7~12주	16.0	2.5	7.0	10.0	·
21-42	·	·	·	·	부화아리 기배합사로	부화후대략 3주 (산란용(산기))	12.0	2.5	7.5	10.0	·
21-43	·	·	·	·	아린배 합사로	생후대략 2~ 4개월	15.0	2.0	7.0	9.0	·
21-44	·	·	·	·	아린배 합사로	생후대략 4개월 이상(산란용 기)(8개월까지 사용)	12.0	2.0	8.0	10.0	·
21-45	·	·	·	·	아린배 합사로	생후대략 7개월 이상(산란용 기)까지	12.0	2.0	11.0	11.0	·
21-46	·	·	·	·	아린영아리 기배합사로	부화후대략 6주까지	19.0	2.5	6.0	9.0	·
21-78	금성축산 사료공장	강동 412-1	이인용	·	사관초기용 배합사로	초산후부대략 20주까지(산란용 비용)	15.0	2.0	7.0	13.0	74.5.2자 76.5.3자



등록 번호	공장명	소재지	대표자	사 료		사 료 성 분				유 효 기 간	비 고	
				종류	명 칭	용 도	최 소 량					
							분말	조지방	조단유			조지방
21-79	김성물 신사로 공장	경동 42-1	이안봉	배합 사료	살만중기용 배합사료	조선후대략 21~35주	14.5	2.0	7.0	13.0	74.5, 4.4 76.5, 3.2	
21-80	·	·	·	·	살만말기 용배합사료	조선후대략 36주이상	14.0	2.0	8.0	13.0	·	
21-81	·	·	·	·	어분기초 배합사료	어분기초 배합사료	50.0	5.0	2.5	20.0	·	어분 95% 박유분 5%
21-82	·	·	·	·	육골분기초 배합사료	육골분기초 배합사료	40.0	8.0	3.0	33.0	·	육골분 98% 박유분 5.0% 염분 5.0%
21-83	·	·	·	·	식물성박류 기초배합사료	식물성박류 기초배합사료	35.0	3.0	8.0	7.0	·	내주박 95% 박유분 5% 염분 5.0%

이 상 17 건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37호

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.

사 료 성 분 등 록

1974. 4.

다음과같이 사료성분등록이 있었기

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호의

서울특별시

사 료 성 분 등 록 사 항

등록 번호	공장명	소재지	대표자	사 료		사 료 성 분 량				유 효 기 간	비 고	
				종류	명 칭	최 소 량						
						분말	조지방	조단유	조지방			
3-30	영육농장 사료공장	신내동 528	김영희	배합 사료	식물성박류 기초배합사료	식물성박류 기초배합사료	350	3.0	8.0	7.0	74.4, 4 76.4, 3	

<p>◎ 서울특별시 고시 제 38 호</p> <p>서울특별시립묘지관리사무소와 그 지소의 명칭 및 위치고사</p> <p>서울특별시립 묘지설치 조례 제 3 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립 묘지관</p>	<p>리사무소와 그 지소의 명칭 및 위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</p> <p>1974. 4. 10</p> <p>서울특별시 장</p>
---	---

명 칭	위 치
서울특별시립묘지관리사무소	경기도 파주군 광탄면 용미리 산 65-1
* 공원묘지지소	* " "
* 용미리묘지지소	경기도 파주군 광탄면 용미리 산 91-1
* 벽제리묘지지소	경기도 고양군 벽계면 벽제리 산 4 - 1
* 내곡리묘지지소	경기도 양주군 전집면 내곡리 558-3
* 망우리묘지지소	서울시 동대문구 망우동 산 57-1

## ◎ 서울특별시 고시 제 39 호

도시계획 용도지역 지적승인

1. 건설부고시 제 198 호 (71.4.7) 에 의거 지정고시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용도지역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지적 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건설부고시 제 123 호

(73.4.4)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해당 구청 및 출장소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

1974. 4. 12

서울특별시 장

가. 도시계획 용도지역 지적 승인조서

구 분	위 치	면 적	비 고
상업지역	서대문구남가좌동 290 번지일대	44,320㎡	
"	영등포구신도림동 919 ) 번지일대 신대방동 557	156,373㎡	
"	관악구사당동 85 } 사당동 583 }	72,900㎡	연장 1,350 m 30 미 터 도로면양측 12미터
"	서대문구불광동 291 } 뉴반동 117 } 일 대 대조동 15 }	27,730㎡	연장 470 미터 35 미 터 도로양측 12 m
계	4 개 지 역	301,323㎡	

별첨 : 도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해당구청 시민봉사실  
에 보관.

㉠ 서울특별시고시제 40 호

도시계획 방화지구지적 승인고시  
: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방화지구  
지적을 다음과 같이 승인 하였기  
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건설부고시  
제 123 호 (73.4.4) 의 규정에 의하

여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 
도시계획과와 성동구청 시민봉사실에  
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 
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

1974.4.12

서울특별시 장

가. 도시계획 방화지구 지적승인 조서

지 구	위 치	면 적	비 고
방화지구	성동구금호동 4 가 548-1 일대	4,840㎡	용도지역은 주거 지역임.

별첨 : 도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성동구청, 시민봉사실  
에 보관.

공 고

◎ 서울특별시 공고제 63 호

도봉 및 창동지구토지구획  
정리사업변경시행인가공고

1. 건설부공고제 35호 ( 74.3.15 ) 로  
인가 공고된 도봉 및 창동토지구  
획정리사업변경 내용을 토지구획정  
리사업법제 34 조 및 제 13 조와 동  
법시행령제 11 조의 규정에 의하여  
다음과같이 공람공고한다.

2. 관계도서는 당시 도시계획국 구

획정리 1 과와 관할구청에 비치하고  
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보이  
고 있다.

1974. 4. 1.

서울특별시장

1) 사업개요

가. 사업명 : 도봉, 창동토지구획정  
리 사업

나. 시행지구 : 서울특별시도봉구방  
학동, 도봉동, 창동,  
창동동 각일부

다. 시행지 : 서울특별시

라. 변경사항 (시행면적)

지 구 명	당 초	변 경	비 고
도 봉	3,995,962 ㎡	2,685,648 ㎡	일부폐지
창 동	2,846,925 ㎡	2,772,588 ㎡	일부천입

2) 유의사항

가. 서울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 사  
업지구내 일부천입 토지는 사  
업실시기간중 (공사) 에 사업집  
행상 도시계획법제 29 조의 규정  
에 의하여 당시가 사용케 되오  
니 환지에정지 지적 및 정지  
공사가 완료되기전까지는 공작  
을 설치 및 농경작황위를 금  
할것이며 상기 행위를 하고자

할 때는 구획정리사업법제 39 조  
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시장  
의 허가를 받을것.

나. 천입된 사업지구내 토지소유  
권의 변동이 있을때는 즉시  
신, 구토지소유자의 연식으로 신  
고할 것.

다. 금번 도봉, 창동지구내 일부  
제천면 지역은 일산지구로 도  
시계획법상 따라 규제를 받게되며

라. 이 공고내용에 대하여는 별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겠으나 통달되지 않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 공고로 갈음한다.

첨부: 사업변경관계도서(생략)

◎ 서울특별시 공고 64 호

도시계획(학교)  
사업시행허가일부완료

1. 서울특별시 고시제 122호(73.7.16)로 시행허가된 도시계획(학교)사업이 일부 완료되었기 도시계획법 제 85조제 1항 및 제 46조제 3항의 규정과 건설부 고시제 123호(73.4.4)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및 영등포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

1974. 4.

서울특별시장

1. 사업시행지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

동 213-2 의 17 필지

2. 사업명: 도시계획(학교)시설사업
3. 사업시행자주소성명: 학교법인우천학원이사장 장학업
4. 면적: 총시행면적: 67,541  
중 금회 34,420 준공
5. 사업기간: 착공: 1973. 7.  
준공예정일: 1973. 12. 31.
6. 준공년월일: 1974. 4.
7. 준공도면: 생략(준공지적조서별첨)

◎ 서울특별시 공고제 65 호

서울특별시 중소기업  
수출품생산지정업체  
변경및대체지정공고

중소기업 수출품생산 지정업체의 변경사항과 취소 및 대체지정사항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수출품생산 지정업체 지정 및 자금지원요령 제 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.

1974. 4. 11.

서울특별시장

1. 변경 지정									
변경 전					변경 후				
지정 번호	기업체명	대표자	소재지	수출 품명	지정 번호	기업체명	대표자	소재지	수출 품명
920	다우편직사	이중영	영등포구 대방동 259의1	헤타	920	다우편직사	이중영	영등포구 당산동6가 331-1	헤타
2. 취소 및 대체지정									
취 소					대 체 지 정				
지정 번호	기업체명	대표자	소재지	수출 품명	지정 번호	기업체명	대표자	소재지	수출 품명
1503	오오공예사	권영각	영등포구 무동 27-22	목각 석각 나전 칠기	1503	오오공예 주식회사	권영각	영등포구 마루동 327-17 19	목각 석각 나전 칠기
<p>◎서울특별시공고제 67 호</p> <p>서울특별시 폐휴지 매수인 지정 공고</p> <p>정부기관 폐휴지 처리요령에 의거</p>					<p>서울특별시 폐휴지 매수인을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한다.</p> <p>1974년 4월 15일</p> <p>서울특별시 장</p>				
성 명	소 재 지				회 사 명			건 화	
이 두 회	서울특별시 중구 예관동 70-27				건국폐휴지수급회			27-7965	

사 령

◎ 1973.10.5

보선행정과 지방행정      정 불 영

지방공무원법 제 31 조 제 5 호  
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  
을 면함.

◎ 1974. 4. 6.

공무원교육원      지방서기관      김 영 근  
(직위해제중)

부직을 명함.  
공무원교육원 교수부근무를명함.

공무원교육원      지방서기관      한 남 영

부직을 명함.  
공무원교육원 교수부근무를명함.

◎ 1974. 4. 10.

중 기 관 리      지방기 계      최 완 중  
사 업 소 기 원

도봉구근부를 명함.

자동차정비장      지방기 계      송 택 근  
기 원 소

서부위생처리장근무를명함.

남 상 갑

중부과근무를 명함.

1 호봉을 급함

지방기계지원보시보에 임함.

최 정 경

동부병원근무를 명함.

1 호봉을 급함.

지방약무지원보시보에 임함.

이 국 자

성북구보건소근무를 명함.

1 호봉을 급함.

지방간호지원보시보에 임함.

이 금 순

성동구보건소근무를 명함.

1 호봉을 급함.

지방간호지원보시보에 임함.

박 정 희

아동병원근무를 명함.

1 호봉을 급함.

지방간호지원보시보에 임함.

이 혜 구

아동병원근무를 명함.

1 호봉을 급함.

지방간호지원보시보에 임함.

<p>지하철건설본부 10호를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. 5호봉을 급함.</p>	<p>규정에 의하여 갑봉 3월에 처함. 동대문구 지방행정 서기보 심경석 수도사업소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, 2 호</p>
<p>지하철건설본부 근무를 명함. 송남보령군 지방행정 서기보 김영희 서울특별시 전인을 명함.</p>	<p>규정에 의하여 파면제 처함. 동대문구 지방행정 서기보 박광우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, 2 호</p>
<p>지방행정서기에 임함. 4호봉을 급함.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.</p>	<p>규정에 의하여 갑봉 6월에 처함. 부직을 명함. 성동구 근무를 명함.</p>
<p>경성현 주 지방행정사 신상익 소업보도소 주 지방행정사 주무경 마포구 주 지방행정사 김상진 영등포구 주 지방행정사 고진규</p>	<p>세마울 지방간호 기보시보 구준희 관악구 근무를 명함. 동원담당관실 지방행정 서기보 유기호 지방행정주사관 임함.</p>
<p>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, 2 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제에 처함. 시민과 주 지방행정 서기보 설낙길</p>	<p>2호봉을 급함. 동원담당관실 근무를 명함. 동원담당관실 지방행정 서기보시보 이정인</p>
<p>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, 2 호의 규정에 의하여 갑봉 1월에 처함. 관악구 근무를 명함.</p>	<p>지방행정서기직 임함. 2호봉을 급함. 동원담당관실 근무를 명함.</p>
<p>서대문구 주 지방행정 서기보 안성수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, 2 호 규정에 의하여 파면에 처함.</p>	<p>○ 1974. 4. 11 종로구 지방행정 서기보 진규태</p>
<p>만리동 주 지방행정 서기보 오진호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, 2 호</p>	<p>북지파파선 ( 74.4.11-74.10.10 까지 ) 근무를 명함.</p>



성 동 구	지방자치 기 사 보	이 중 준	조 심 계
중기판락사업소	근무를 명함		지방행정서기보시보에 입함.
중기판락사업소	지방자치 기 사 보	이 경 순	1호봉을 급함.
성동구 근무를	명함.		성북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.
도시계획과	지방토목 기 사 보	최 진 인	이 만 식
남부건설사업소	근무를 명함.		지방행정서기보시보에 입함.
남부건설사업소	지방토목 기 사 보	김 예 준	1호봉을 급함.
보광동수원지사무소	근무를 명함.		성북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.
연료과	지방행정 사무관	조 구 행	이 승 일
원에 의하여	그직을 면함.		지방행정서기보시보에 입함.
			1호봉을 급함.
◎ 1974. 4. 13			성북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.
		임 질 순	황보광희
지방행정서기보시보에	입함.		지방행정서기보시보에 입함.
1호봉을	급함.		1호봉을 급함.
성북구수도사업소	근무를 명함.		성북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.
		김 중 현	윤 상 호
지방행정서기보시보에	입함.		지방행정서기보시보에 입함.
1호봉을	급함.		1호봉을 급함.
성북구수도사업소	근무를 명함.		도시가스사업소 근무를 명함.
		정 진 국	노 재 호
지방행정서기보시보에	입함.		지방행정서기보시보에 입함.
1호봉을	급함.		1호봉을 급함.
성북구수도사업소	근무를 명함.		도시가스사업소 근무를 명함.

<p>지방행정서기보시보에 임함. 1호봉을 급함. 도시가스사업소 근무를 명함.</p>	<p>이 상 백 ○ 1974.4.15 대구시 서구 지방토목 건설과 기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. 지방토목기원회 임함.</p>	<p>이 호 권</p>
<p>지방행정서기보시보에 임함. 1호봉을 급함. 도시가스사업소 근무를 명함.</p>	<p>이 봉 회 4호봉을 급함. 관악구 근무를 명함. 경북청주군 지방토목 건설과 기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.</p>	<p>한 석 창</p>
<p>지방행정서기보시보에 임함. 1호봉을 급함. 도시가스사업소 근무를 명함.</p>	<p>우 일 훈 지방토목기원회보시보에 임함. 1호봉을 급함.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.</p>	<p>홍 중 권</p>
<p>지방행정서기보시보에 임함. 1호봉을 급함. 도시가스사업소 근무를 명함.</p>	<p>이 용 운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. 지방행정주사에 임함. 3호봉을 급함. 공무원교육원 근무를 명함.</p>	<p>송 남 현</p>
<p>지방행정서기보시보에 임함. 1호봉을 급함. 도시가스사업소 근무를 명함.</p>	<p>송 남 현 농촌지도소 농촌지도 사 농림시보에 임함. 6호봉을 급함.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.</p>	<p>윤 병 식</p>
<p>지방행정서기보시보에 임함. 1호봉을 급함. 도시가스사업소 근무를 명함.</p>	<p>진 성 근 서대문구 농림기사보 지방농림기사보에 임함. 6호봉을 급함.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.</p>	<p>윤 병 식</p>

대아리보존수원지사무소	지방전기 기원보시보	강 원 회	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임함. 1호봉을 급함.	
서부위생처리장	군무를 명함.			
서울특별시 -국제우체국	행정주사	이 재 오	중부병원 군무를 명함.	장 숙 회
서울특별시	전입을 명함.			
지방행정주사에	임함.		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임함. 1호봉을 급함.	
5호봉을	급함.		동부병원 군무를 명함.	
중구	군무를 명함.			
서울특별시 위생처리장	지방기계 기사보	한 영 철	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임함. 1호봉을 급함.	이 순 이
원에 의하여	그직을 면함.		동부병원 군무를 명함.	
서울특별시 사회복지관	지방행정 기사	조 지 혁	1호봉을 급함.	
판야구	군무를 명함.			
부녀상담소	지방행정 기사보	김 용 근		장 혜 숙
이동상담소	군무를 명함.		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임함. 1호봉을 급함.	
이동상담소	지방행정 주사보	김 성 구	동부병원 군무를 명함.	
용산구	군무를 명함.			
도시가스사업소	지방행정사무 관(권리제장)	박 봉 일	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임함. 1호봉을 급함.	신 은 순
도시가스사업소	사무과장에 포함.			
도시가스사업소	지방행정사무 관(과장제장)	이 용 운	서대문병원 군무를 명함.	
도시가스사업소	과장제장에 포함.			원 선 자
© 1974.4.17			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임함. 1호봉을 급함.	
		김 만 회	중구보건소 군무를 명함.	

서울특별시